

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 공고

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」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  
국토교통부장관

□ 신청사실
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 청 자 |      | 주식회사 코크랩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|
| 신청일자  |      | 2024. 9. 11.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내용  | 상 호  | 주식회사 코크랩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|
|       | 본 점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4층(삼성동, 골든타워) |
|       | 자본금  | 83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신청취지 | 변경인가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신청내용 |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|      | TEL 02-787-0193                  |

□ 의견제시 방법

- 상기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 
  
<우편으로 의견제출>  
  
-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 
  
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투자회사 담당자 앞(우편번호 30103)
- 의견 제시기한 : 2024. 10. 3.
- 기타
  -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(044-201-4812)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